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2021. 6. 28.

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SK디앤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의2제1항, 제542조의6제1항 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(구성)

- ①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(소집권자)

-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 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

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원의 수에는 포함되나, 결의 성립에 필요한 위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- 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

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7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3조(사무국)

위원회의 사무국은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단위조직의 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14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2021.6.28.)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